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70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가단24832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문서의 명의인이 그 서명이나 인영을 부인하는 경우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검토

가)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 21(각 약속어음 앞면, 이하 ‘원고 제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제출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 제출 약속어음에 있는 서명은 피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제출 약속어음에 배서한 제1심 공동피고 C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C의 동생은 D(D, E생)이고 피고는 B(B, F생)으로 동일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출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제출 약속어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

청 구 원 인

1.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발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 C은 동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음

번호	금액	지급거일	발행일	지급장소	발행인	배서인(1)	배서인(2)	최종 소지인	종류
1	5,000,000	2009/05/26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① 금 5,000,000 원중 금 1,900,000 원정 회수									
2	1,000,000	2009/08/29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3	1,000,000	2009/09/04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4	5,000,000	2009/08/28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5	5,000,000	2009/09/26		C/3 장신동 K-POSE	B			A	약속어음
6	5,000,000	2009/08/15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7	5,000,000	2009/08/08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8	3,000,000	2009/09/25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9	2,000,000	2009/09/05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10	2,000,000	2009/09/12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11	3,000,000	2009/09/05		C/3 장신동 K-POSE	B	C		A	약속어음
	35,100,000								

2. 원고는 이 건 어음등의 마지막 배서양도 받은 적법한 최종소지자로서 이 건 어음등의
지급거일에 지급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변제기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
치 아니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35,100,000 원의 부당어음금의 반환과 이에대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